



고용관계 전 종업원이 부정취득한 고객정보 사용 관련 금지청구에 대한 항소심 사건

11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고등법원	사건 번호	평정12년(네) 제5926호
판결 일자	2001. 6. 20.	판결 결과	원심 유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치요다 테크놀		
피고 (항소인)	A, B, 주식회사 레이테크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4호, 5호		
영업 비밀	고객목록, 다이렉트 메일 발송처 데이터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고객목록		

02 사건 개요

방사선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받은 방사선양을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피고 A와 B는 동종 업계의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부정 취득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다이렉트 영업 메일을 발송했다.

원고의 고객들은 원고 회사와의 계약 만료시점의 한 달 반 내지 보름 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서비스 계약을 권유하는 다이렉트 메일을 받았다. 해당 다이렉트 메일은 원고의 요금표와 대비시켜 저비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양 당사자들이 종사하는 업계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4개사가 약 9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극단적인 과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 등에 의한 수요 및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수입 감소가 발생한 시점에, 피고 회사 이외의 동종 업계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서 메일을 받은 원고의 고객에게서 원고와의 계약을 중지하거나 할인을 요청한 사업장이 속출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영업 활동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사용 금지 청구의 전부와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본 사건은 피고들이 원심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사건이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항소인)	⇔	⇐	피 고 (항소인)
피고 B는 C에게 피고 개인 소유의 컴퓨터에 본건 고객정보를 복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해당 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1997년 3월 당시, 원고 회사 사옥 내에는 피고 B 개인 소유의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 B와 C가 월말에 이동발령 받는다는 사실은 월초부터 피고들에게 구두로 전달되었다.			발령받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퇴직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본건 고객정보의 복사를 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원고의 고객은 사업소 수로 1만 4000개 이상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랜 영업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개별 고객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없다.			다이렉트 메일 전송처 데이터는 오랜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활용한 것이고 본건 고객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04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사실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수입 감소와 피고들의 부정경쟁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 B가 C에게 고객정보를 개인 소유 컴퓨터에 복사시켰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건 고객정보를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개인 소유의 컴퓨터에 복사한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원심 증언의 신용성을 부정할 수 없다.

증거에 의해 피고 B와 C가 원고의 상무이사 본부장인 E로부터 이동 발령의 건을 구두로 전달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다이렉트 메일 발송에 있어 본건 고객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당 발송처가 고객목록에 기재된 연속되는 사업소 번호의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 피고 회사의 다이렉트 메일 발송처의 사업소에서 연락이 없는

한 이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이 본건 고객정보를 이용하면서 영업상 유리한 사업소를 선택하여 메일을 발송한 것이 강하게 추인된다고 할 수 있다.

피고들은 본건 고객정보와 피고 회사의 다이렉트 메일과의 데이터 공통성을 나타낸다고 지적된 자필 라벨은 3건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 또한 우연히 원고가 입수한 증거로 제출된 것이 3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받는 사람의 라벨 정보가 본건 고객정보 이외에서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피고들의 아무런 합리적인 주장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인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05 Key Point

단순한 노력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 외에 수집된 고객정보와 목록을 취득하여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